

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2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6. 1 고성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0. 6. 1
- 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0. 6. 10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지방행정조직 기능 조정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서간 업무조정과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부서간 업무조정(안 제3조)
 - 문화관광과에서 → 자치행정과로 이관
 - 대외 협력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
 - 군민의식 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
 - 각종 사회단체 관리
 - 문화관광과에서 → 기획감사실로 이관
 - 발전추진위원회 운영
 - 교육(학교) 운영에 관한 사항
 - 재무과에서 → 기획감사실로 이관
 -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
- 업무 소관부서의 명확화(안 제3조)
 - 군민의날 행사 추진(문화체육부문 제외) : 자치행정과
 -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운영 총괄 : 환경녹지과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위하여 그간 몇 차례에 걸쳐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, 예산절감 등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행정을 위하여 추진한 결과에서 나타난
-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과 부서간 업무조정 등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기능조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역협력 담당업무가 타부서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잔여인력 및 조직의 향후 운영계획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조례안 입법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의 내용과 본 조례안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보는데
- 답 :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사업 설치·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필요하게 되었음.
- 문 : 본 조례안중 『추가』 용어기재 및 『신설』 용어누락 등으로 입법 준용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
- 답 : 『신설』 용어의 누락, 『추가』 용어의 기재 등은 잘못되었음.
- 문 : 문화관광과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는 이유는
- 답 :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내용중 일부를 주요 핵심부서에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.
- 문 :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인력 배치계획은
- 답 : 문화관광 기획업무를 보강하고 향후 인력을 재진단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할 계획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6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